



출연자원

관련부처
보건복지부

지원대상
중소·대기업

4-5.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(보건복지부)

21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

✓ 지원대상
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

✓ 지원내용

- 지원과제 (2013년 신기술개발 분야)
 - 첨단의료기술개발
 - 세부과제 : 신약개발, 비임상·임상시험지원, 유망보건의료, 줄기세포·재상의료
 - 지원사업비 및 기간 : 과제당 연간 3~12억원 이내, 1~3년 이내
 -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
 - 세부과제 : 면역백신개발
 - 지원사업비 및 기간 : 과제당 연간 3.5~12억원 이내, 5년 이내
 - 국산희귀의약품연구개발
 - 세부과제 :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, 유망 치료재료 개발
 - 지원사업비 및 기간 : 과제당 연간 6~18억원 이내, 2년 이내
- 기술료 징수
 - 영리법인인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~40%(대기업 4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10%)의 기술료 납부

✓ 신청방법

- 신청시기 : 2013년(상반기) 4월, (하반기) 7월
- 신청방법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htdream.kr>)에서 전산입력 후 우편접수

문의처

www.htdream.kr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지원팀 (043)713-8418
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(02)2023-7595